대출거래 추가약정서 (주택 구입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용)

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앞 20 년 월 일

채무자 본인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(이하 '은행'이라 합니다.)와 약정한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채무자 : (인) 주소 :

제 1 조 목적

이 약정서는 전세자금대출 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서입니다.

제 2 조 용어

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주택의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'고가주택'이란 '시가 9 억원 초과 주택'을 말합니다.
2. '규제대상 아파트'란 '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 억원 초과 아파트'를 말합니다.

제 3 조 기보유 주택

채무자 및 그 배우자(결혼예정자 [1] 를 포함, 이하 같음)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되나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경우는 포함, 이하 같음)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주 1) 3 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인 자에 한함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 4 조 주택취득 등 제한

채무자 및 그 배우자가 본 대출기간 동안 고가주택을 취득 [2] 하거나, 2 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,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습니다.

주 2) 소유권 취득,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, 이하 같음

제 5 조 주택보유수 확인

① 은행은 최초 대출실행 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(이하 'HOMS'라 함)을 통해 은행에 등록된 채무자 및 그 배우자의 주택보유수를 확인합니다.

② 대출 실행 후 관련 법령 등의 준수 및 정부정책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은 채무자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수를 HOMS 를 통해 확인합니다.

제 6 조 의무위반이 아닌 경우

제 5 조에 따라 채무자 및 그 배우자가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,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 4 조 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. 단, 고가주택 또는 2 주택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.

1. 채무자 및 그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과 관련된 자료(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내역 등)를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
   가. 취득한 주택이 규제대상 아파트인 경우로서 '20.7.9.까지 해당 아파트(분양권, 입주권 등 포함)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
   나. 취득한 규제대상 아파트 소재지역이 현재시점 이후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우로서, 그 신규지정일 전까지 아파트(분양권, 입주권 등 포함)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

제 7 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

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 7 조 제 4 항 제 2 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

할 의무를 집니다.

1. 제 4 조를 위반하여 본 대출 전액 상환 전에 고가주택을 취득 또는 2 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,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

제 8 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유예

제 7 조에도 불구하고, 아래의 사유의 경우 제 7 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본 대출 변제 의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.

1. 무주택 가구가 본 대출기간 동안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제 5 조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: 본 대출의 만기일자와 취득한 규제대상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

제 9 조 여신거래 약정위반

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전액 상환여부와 관계 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향후 3 년간 금융기관 [3]의 주택관련 대출 [4]이 제한됩니다. 단, 제 8 조에 따라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까지 약정위반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습니다.

주 3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제 2 항 제 1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주 4) 『은행업감독규정』<별표 6> 제 1 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

1. 제 4 조를 위반하여 본 대출 전액 상환 전에 고가주택을 취득 또는 2 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,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